

2023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사록

□ 회의개요

일 시	2023년 6월 29일	기록자	사무처장 최용노 (인)
장 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감실		
재적위원	5 명		
출석위원	5 명		
참 여 자	김인식, 김성한, 김영수, 남상일, 이장순		

□ 의결사항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제2023-6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	동구지역자활센터 차려드림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임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 지원 승인	경영지원부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2023년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으로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에 25,000,000원 지원 결정	"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2023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총 16,000,000원 지원 결정 (상세) ① 유성실버복지센터 사업, 2,400,000원 ②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사업, 2,600,000원 ③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사업, 3,330,000원 ④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사업, 3,700,000원 ⑤ 서구노인복지관 사업, 4,000,000원	"

□ 회의내용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23년 6월 29일

위원장 김 인 식 (인)

위 원 김 성 한 (인)

위 원 김 영 수 (인)

위 원 남 상 일 (인)

위 원 이 장 순 (인)

회의록

회의일시	2023. 6. 29.(목) 14:00	장 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10층 공감실
참석상황	위원 5명 참석		
참석위원	○ 위원장: 김인식(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위 원: 김성한(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영수(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팀장) - 남상일(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 이장순(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간 사: 최용노(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심 의 안 건	○ 제2023-6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 ○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회 의 진 행 순 서	○ 위원장 인사 ○ 성원보고(간사) 및 개회선언 ○ 전차보고(간사) ○ 제안설명(간사) ○ 안전 심의 의결 ○ 기타 논의 ○ 폐 회		

<회의내용>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장	○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회의 시작 전, 진행을 위해 성원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안건 심의에 앞서 간사로부터 전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지난번 진행된 제3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서면의결로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전세점포임차 연장 지원안과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지원사업 변경계획안, 총 2건이 심의되고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 2건의 심의 중 첫 번째는 동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2개소 및 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1개소의 전세점포임차를 2년간 연장 지원하는 사안이었고, ○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2023년 지원사업의 공모 금액 최대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2천 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개 안건인데요.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후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 | |
|-------|---|
| 위 원 장 | ○ 간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간 사 | <p>○ 자료 3쪽, 의안번호 제2023-6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입니다.</p> <p>○ 5쪽 제안이유는 자활기금 활용 기관의 신청에
따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전세점포임차 지원을
의결하고자 부의하는 사안입니다.</p> <p>○ 주요내용은 동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차려드림’의 전세점포임차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차려드림’ 자활근로사업단은 맞춤형 반찬
제조·판매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현재
우리 원의 자활기금을 임차보증금(30,000천원)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p> <p>○ 그러나 사업이 지속 확장됨에 따라 현 임차
장소가 조리과 판매를 동시 운영하기에 협소하여,
기존 임차 공간은 조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반찬 판매 공간을 추가 임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p> <p>○ 검토 결과, 해당 임차 예정지는 근저당권설정
선순위 채권액이 없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액의
60% 상당액이 기금 지원액을 상회하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여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

	○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되나요?
위 원 장	○ 예. 잘 되니까 좀 더 큰 점포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 지금 이 사업 차려드림이라는 사업단에서 사업이 활성화돼서 점포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물건지가 지금 이제 반찬을 만들고 조리하는 곳 하고 별도 분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상으로 보니까 대동은 대동인데 같은 바로 옆인가요?
담당부서장	○ 네.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같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위원	○ 이제 저희가 기존에 신규 사업은 아니고 3,000만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1,00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기금이 이제 33억 정도 되지만 저희는 실제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만 계속 적립되는 부분이고 사업단의 적립은 자활복지개발원과 자치구에 들어가거든요.
	○ 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자활 사업 국비가 한 저희가 예산이 91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쓸 수 있어요. 저희 자활 사업 지침에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활성화 지원금이나 자활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1억이라는 금액을 구별로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이 돈에서도 보증금을 쓸 수 있어요. 이 돈이 모자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작년에도 동구 같은 경우 반납을 했고, 지금 올라온 이 건이 동구거든요.
	○ 동구에서 국비로 9억 정도가 반납을 받았어요.

그러면 굳이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말 신규 사업이라면 제가 우리 기금에서 쓰라고 하겠는데 굳이 우리 돈에서 이렇게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정말 창고가 없으면 이것을 열어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걸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위원 ○ 혹시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건지... 반납까지 할 정도로 돈이 있는데도 굳이 그걸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 ○ 자활 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자활사업단의 차량 구입 및 점포 임대료 임차보증금 포함 사업비 또는 활성화 지원금에서 사용 가능. 사업비는 저희가 주는 거고 활성화 지원금은 자기들 매출액에서 적립되는 부분이니까 이 돈은 본인들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 자체에서 써도 이거 사업비는 우리가 주는 국시비거든요. 그럼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걸 쓰라는 거지. 저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굳이 우리 기금으로 1%로 이자를 내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걸 국비니까 이자도 없어요.

간 사 ○ 그럼 이 안전에 대해 잠깐 중지를 했다가 후에 확인해 보면 어때요?

담당부서장 ○ 네 그럼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얼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본 다음에, 두 번째 안을 먼저 심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네 잠시 보류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그럼 의안번호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지원사업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 원 장 간 사	○ 간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11쪽, 의안번호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입니다. ○ 13쪽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활분야 지원 사업 공모 참여 내역을 심의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2023년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1건,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 사업내용 및 신청금액 2,500만원에 대해 심의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14~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인 경영지원부장이 자활분야 공모에 지원한 사업의 개요와 심사표 작성 등에 대해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	○ 오늘 심사는 기금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범위 확보를 위해서 지정 사업에서 사실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오늘 자활 분야 1건, 노인 분야 10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심의하시고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자활 분야와 뒤에 있는 노인 분야 모두 공모 사업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 주셨고요. 사업 내용에는 부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자활 분야는 대전광역시 내 자활 관련 기관 단체가 지원할 수 있었으며 1개소당 1건 공모 신청 가능하였고요. 공모 사업비 지원 규모는 한 건당 최대 2,500만원까지였습니다. ○ 공모 참여 기관은 사단법인 대전 지역자활센터협회이며 자활 한마당 사업에 총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5개 자치구 지역센터 및 대전광역시자활센터가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대전 자활한마당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효과적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발전이라는 법인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자활 한마당은 전국 시도별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동체성 형성이 중요한 자활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행사로 여겨집니다. 다만 단일성 유형의 사업인 만큼 효과성,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 지난 회차 때 안건으로도 자활분야 공모사업 1건에 최대 2,500만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상정과 의결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 사업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 그러면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에 대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 한 기관밖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담당부서장	○ 네. 협회에서 한 기관에서 신청하셨습니다.
위 원 장	○ 네.
○○○위원	○ 이게 5개 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단법인 자활 협회가 5개 구로 변환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아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23년도에 이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 500만원 부분은 사단법인

	지역사회 자활센터 협회의 돈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돈인지..?
담당부서장	○ 네. 예전에도 센터에서 이렇게 자활 한마당 했을 때요. 각 센터별로 자부담을 형태로 해서 모아서 한 번에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500만원으로 지금 하셨지만 그 이상의 돈이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그 전에도요. 그래서 5개 센터에서 각자 자부담을 해서 이 한마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 결국은 자부담 부분이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주는 부분으로 그런 부담을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담당부서장	○ 네. 자부담이 들어가긴 합니다.
위 원 장	○ 자부담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느 예산에서 자부담을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죠.
담당부서장	○ 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긴 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자활 센터에서 비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원	○ 센터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오는 건 힘들고 그럴 것 같네요.
위 원 장	○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 이걸 이제 저희 보조금의 부분이라 엄밀히 따지면 자부담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	○ 자부담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장	○ 기관이 협회다 보니 협회비를 내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활용해서 쓴다 하면 그거에 대한 지출 범위나 이런 것들도 또 명확하게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의

○○○위원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 들긴 합니다. ○ 당초 사업 부분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로 했으면 그게 이제 다시 바뀌었잖아요. 한 군데 협회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사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 예산을 보면 기념품이라든가 식사 부분이 거의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는 공모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제한해 주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장	○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협회랑 사실 사전에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요. 그런 의견들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렇게 일회성 사업에 대한 우려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먼저 시행을 하시고 다른 자활 한마당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더 반영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주신 두 가지. 자부담의 정의 물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지향을 해야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의 목적 사업 몇 가지 분리를 하면 되잖아요.

	○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을 좀 정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회성 사업에는 사실 이게 공모 사업으로서 이게 참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없으신 거죠? ○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리 위에 심사표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걸 좀 작성해 주시고 또 작성해 주시면 우리 실무진은 심사표를 준비해서 최종 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 위원별 심사표 작성 및 집계 후 > ○ 심사표 집계 결과,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 사업은 심사조건을 충족하고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2023년 지원사업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 동	○ 없습니다.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2023년 지원사업으로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을 선정하고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와 재청해 있으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	○ 네, 재청합니다.
위 원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분야 2023년 지원사업은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전자활한마당’을 선정하고 총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자료 19쪽, 의안번호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선정(안) 입니다. ○ 21쪽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공모 참여 내역을 심의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은 2023년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10건의 사업 내용 및 예산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22~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인 경영지원부장이 노인복지분야 공모에 지원한 사업들의 개요와 심사표 작성 등에 대해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	○ 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분야의 공모 사업비 총액은 1,6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기관 10곳의 총 신청액은 41,675,000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신청 금액의 소요액이 나와있습니다.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나눠드린 심사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심사표에 의거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점수 순서로 공모 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원액 조정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공모 안내할 때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되었습니다. ○ 심사 내용 및 점수의 심사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 진행 후 > ○ 이상 노인복지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네. 공모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지금 총액이 1,600만원이고 신청액 한도가 500만원이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각자 한 4개 기관 정도만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합쳐서 돈이 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에 대해서만 예산 내역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	○ 지금 내용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1,600만원이니까 처음이니까 네 군데를 선정을 먼저 해서 4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 원 장	○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 지원 기관별 세부 논의 후 >
위 원 장	○ 네. 그리고 금액 대비해서 예산도 축소하고 조금씩 하고 해서 다섯 개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	○ 5개를 하면 32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위 원 장	○ 그럼 됐네요.
위 원 장	○ 신청한 금액이 적은 기관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주고...
간 사	○ 10만 단위는 짜르고 2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100 단위로 주는 게 좋겠네요.
위 원 장	○ 신청한 금액 대비해서 예산 축소를 조금씩 하게 해서 5개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	○ 네. 근데 이게 글썽요. 결과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액수는 또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럼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대로 그렇고 심사하는 사람은 심사하는 사람대로 그렇고... 하여튼 결론을 내고서... 여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위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위 원 장	○	네. 맞습니다.
○○○위원	○	차라리 전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전시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더라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좀 나눠줘야 하는데 또 이 계획서 짠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돈을 맞춰서 기획을 한 것일 테고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낭비가 너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위원	○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숫자도 중요한데요. 숫자를 한 세 군데에서 500, 500, 600 이렇게 나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공모 사업이라는 퀄리티가 다음 년도에는 이거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같아요.
위 원 장	○	네. 앞으로는 공모 사업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그래요. 그럼 이제 결정하시죠.
담당부서장	○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신청액에서 규모에 따라 100만원이나 50만원 정도씩 감하면 총 금액 1,600만원 정도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군데 중에서 특별하게 빼고 싶은 곳이 없으시다면 금액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	그럼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공모 신청 내용에 대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 동	○	없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은 자리 위에 놓여 있는 심사표를 작성해주시고, 실무진은 심사표를 집계하여 최종 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표 개별 작성 및 집계 후> ○ 심사표 집계 결과, ①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사업, 3,700,000원 ②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사업, 3,330,000원 ③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사업, 2,600,000원 ④ 서구노인복지관 사업, 4,000,000원 ⑤ 유성실버복지센터 사업, 2,400,000원 ○ 총 5가지 사업이 심사조건을 충족하고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2023년 지원사업으로 선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	동	○ 없습니다.
위	원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2023년 지원사업으로
	장	①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사업, 3,700,000원 ②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사업, 3,330,000원 ③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사업, 2,600,000원 ④ 서구노인복지관 사업, 4,000,000원 ⑤ 유성실버복지센터 사업, 2,400,000원 총 5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와 재청 있으십니까?
○ ○ ○	위	○ 동의합니다.
○ ○ ○	위	○ 동의합니다.
○ ○ ○	위	○ 재청합니다.
위	원	○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2023년 지원사업으로 총 5가지 사업에 총 16,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 의사봉 3타 ~
위	원	○ 의안번호 제 2023-6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 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말씀들이
	장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담당자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알아보라고 하신 부분 동구 지역자활센터와 동구청에 전화해서 여쭙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동구청에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왜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동구청 담당자의 말씀은 일단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처음 당초 본 예산에 구청에서 쓰는 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쓰는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남아서 반납한 부분의 금액은 구청에서 사업비로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봤어요. 구청에서 남은 금액을 자활센터에서 쓰실 수 있게 조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쭙봤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은 본 예산 때 의결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사업 계획 변경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해야 되는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그런 탄력적인 부분을 바로바로 반영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셔서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저희 쪽이 더 빠른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우리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더 필요한 설명들이 있으신가요?

○○○위원

○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사업이 잘 된다고 추정을 하시는데 사업단이 개인 사업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업 무 담 당 자	○ 사업자는 법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자활센터에서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의 사업입니다.
담당부서장	○ 개인은 아닙니다.
○○○위원	○ 예.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잘 되는지 정도는 추후에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증금이 증가된다고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보증금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업 무 담 당 자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 사업단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있어서 분기별 변화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일 동	○ 없습니다.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자활 분야 전세점포임차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일 동	○ 없습니다.
위 원 장	○ 더 이상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 전세점포임차 지원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4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